

第199回國會 政治構造改革立法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8年12月22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6. 政黨法中改正法律案
7. 政治制度關聯法改正에 관한請願
8. 特別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 | | |
|---|----|
| 8. 特別委員會運營에 관한件 | 1面 |
|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李國憲·鄭義和·權哲賢·徐相穆議員外 19人 發議) | 5面 |
|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安商守議員外 33人 發議) | 5面 |
|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金仁坤議員外 56人 發議) | 5面 |
|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秋美愛議員外 23人 發議) | 5面 |
|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鄭東泳·金元吉·韓和甲議員外 102人 發議) | 5面 |
| 6. 政黨法中改正法律案(金玉斗·柳宣浩·金元吉·韓和甲·李相洙·金令培·金忠兆·
朴宗雨·元裕哲·李聖浩·張誠源·秋美愛·洪文鐘議員外 92人 發議) | 5面 |
| 7. 政治制度關聯法改正에 관한請願(金槿泰議員外 5人 紹介) | 5面 |

(10시24분 개의)

○委員長 林采正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政治構造改革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까.

○立法調査官 朴出海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林采正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번 회의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위원이 계십니다. 李相賢委員이 지난 번에 인사를 못하셨지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賢委員 한나라당 李相賢 委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林采正 다음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林仁圭 立法審議官입니다.

(직원인사)

8. 特別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0시26분)

○委員長 林采正 먼저 特別委員會運營에 관한건을 上程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마는 議決定足數는 되지를 않습니다. 열세 분이 오서

야 하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바쁘시고 그래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두 분만 더 오시면 되겠는데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두 분 간사 위원 좀 나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 원래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의사일정 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치제도관련법개정에 관한청원 이상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해서 결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3당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이 안건들을 각 소관 소위로 넘기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즈음 모두 연말이라서 바쁘시고 너무도 바쁘시고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당 간사끼리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소위에 넘기도록 그렇게 위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소위로 넘겨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송부된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가 마련한 國會法改正案 등 3건의 법률안은 국회관계법소위원회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소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으로부터는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국회법개정안 등 국회관련개혁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國會關係法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운영과 각 소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宣浩 委員님……

○柳宣浩委員 지금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올

해 국회가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사실은 부응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국회관계법 개혁을 연말 내에는 처리를 해야 국회가 국민들의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다소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회관계소위는 소집책임자, 다른 소위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마는 소집책임자를 전체회의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정해서 여야간에 교대로 소집을 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위원장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일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시급히 시정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李源馥 委員 말씀하시지요.

○李源馥委員 저희 政治改革特委가 국회법이라든가 또 각종 선거법이라든가 또 정당법이라든가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법들을 그야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 저희가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직은 미약하다 라고 할까 대단히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것은 아주 도가 지나칠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극에까지 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정치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 생각해 볼 적에 아주 오래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러한 형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조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이 국민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사회적인 또는 정치사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어떤 특정 당의 당리당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의식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치개혁특위가 있다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안 나와 계십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우선 의사정족수에서 모자란다 하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어찌보면 3당간에 정치개혁제도에 대한 그야말로 포럼이라도 해서 공식회의의식이 아니라 바깥 좌석에서도 정말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三權分立體制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로 형성되어 와서 삼권분립의 역할체제가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한국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여러 기능적으로 잘못되어 간 핵심적인 이유가운데 하나가 저는 형식상은 삼권분립체제로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 행정부의 시녀역할을 한 국회로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역대 獨裁政權下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참 귀찮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재자들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 감 놈라 대추 놈라 하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적에 독재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참 귀찮은 시어머니가 많은 존재가 국회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 동안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서 국회는 그야말로 기관만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 한다고 하나까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내막에 들어가서는 국회는 행정부의 절대적인 侍女役割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에 된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것이 이미 구조화되고 그것이 이미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지배될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모든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같이 검토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상의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회가 가져야 할 권한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가, 저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豫算比率만 보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는가에 대한 대비표를 OECD 국가 내지는 주요 선진국가,

민주 선진국가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잠시 간담회 할 적에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제공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立法府 豫算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전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몇%를 쓰는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행정부 전체 예산을 1,000으로 났을 적에 입법부 예산이 1입니다. 1대 999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999라고 하는 예산을 쓰는 행정부에 대한 監視와 말하자면 執行에 대한 監督權限에 대한 비용을 쓰는 것은 1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산 가지고 999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사해 보고 잘 쓰고 있는지 못쓰고 있는지 경영평가해 봐라 이것이 지금 현재의 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부가 갖고 있는 이렇게 정말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서 우리 국회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는 것을 저는 못보았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999라는 예산을 지금 감시하고 제대로 되는가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데 1이라는 예산을 갖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이것마저도 도하 각 언론, 여기 言論社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론이나 기타 각계각층의 誤導된 여론 가지고 말하자면 국회를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국회보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회는 아무 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기관이라고 하는 유형의 통념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질 것은 제대로 가져 가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못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거나 바깥으로부터 통타를 당할 때 당하더라도 제대로 가져야 할 권한조차를 갖지 못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행정부의 시녀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形骸化되어 있는, 뼈다귀만 남은 이러한 상태의 국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시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부분적인, 현상에 있는 것속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개혁하고 고쳐나갈 것인가 이것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시점에 우리 특

위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金大中 政府가 들어 섰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 잘 아시다시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 없이 줄기차게 민주화운동하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 제대로 세우겠다 해가면서 투쟁했던 분과 그러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달리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진실로 이 나라가 民主化運動 했던 그 대의를 맞아서 그 뜻대로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三權分立 體制가 명확하게 되고 3권의 명확한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국회나 우리의 정당이나 우리의 선거제도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민주제도들이 싹틀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되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 제도들이 성안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과연 우리의 국회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파워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그 총량규모가 행정부나 사법부가 갖고 있는 파워에 비교해서 또 議會民主主義가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 나라의 국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비교분석들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政黨問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저도 야당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野黨生活 할 당시에 명색이 제1야당이 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명색이 제1야당이 당사에 컴퓨터 하나 제대로 된 것 없고 복사기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그런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유급직원이라고 해봐야 한 40명 정도 유급직원 있었는데 그 40명 되는 유급직원한테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이런 시대의 야당을 겪어 보았습니다. 정당만 해도, 적어도 명색이 정당이라고 할 적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一國의 앞으로 장래에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사에 가장 중요한 조직 가운데 핵심적인 조직이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당만큼 중요한 기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야당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정당만 하더라도 여기 언론사 계십니다마는 한 개 언론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비용이나 소프트웨어비용도 연간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지금 집권당 있고 우리 제1야당 있고 그러합니다마는 요즘은 조금 늘어나고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再加工해서 국가 생산적인 그러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그러한 하드웨어로서의 정당에 그러한 지원이 있는 것이냐, 그러한 소프트웨어 비용에 지원이 제대로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한번 黨利黨略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이 시대에 정당이 어떻게 가야 되고 국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특위가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采正 李源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邊精一 위원님, 말씀하세요.

○邊精一委員 제가 듣기로는 우리 특위에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오늘 6개 법안과 하나의 청원을 국회관련입법소위에 넘김으로써 소위 활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3개 小委의 委員長을 어느 당이 맡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사들 사이에 논란을 벌인 끝에 한번씩, 與가 한 번 사회하고 野가 한 번 사회하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게 나온 것인지, 당분간 그렇게 해보자 라는 취지인지 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소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위원회 운영을 책임질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께서 幹事會議를 소집을 하셔서 3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빨리 정하셔서 소위원회 활동을 정상화시켜야만 일이 제대로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邊精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유발언중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전까지는 議決定足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3당 간사의 합의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합의를

처리를 했었는데 마침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李國憲·鄭義和·權哲賢·徐相穆議員外 19人 發議)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安商守議員外 33人 發議)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金仁坤議員外 56人 發議)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秋美愛議員外 23人 發議)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鄭東泳·金元吉·韓和甲議員外 102人 發議)
6. 政黨法中改正法律案(金玉斗·柳宣浩·金元吉·韓和甲·李相洙·金令培·金忠兆·朴宗雨·元裕哲·李聖浩·張誠源·秋美愛·洪文鐘議員外 92人 發議)
7. 政治制度關聯法改正에 관한請願(金槿泰議員外 5人 紹介)

(10시45분)

○委員長 林采正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치제도관련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에 따라 이상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송부된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가 마련한 國會法改正案 등 3건의 법률안은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출되는 법률안 및 청원들도 아주 중요한 안건이 아니면 위원장이 3당 간사와 협의하여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바로 각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토론하시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李相洙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그 동안에 저희 특위의 소위 운영과 소위원장 문제에 관해서 간사간의 논의를 거쳤는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특위 위원장 자리가 있고 3개 소위원장이 있으니 4개 자리를 여야가 반분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었고, 우리 여당측에서는 특위 위원장 자리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와 함께 맞물려서 이미 다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소위원장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야당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소위원장을 선택하라 그리고 나머지 두 소위원장은 자민련과 우리 국민회의가 하나씩 갖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각 소위의 여야 책임자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소집하도록 하자 또 과거에도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양당이 좀 원만하게 양보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이 소위의 여야 召集責任者를 정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은 李相洙 위원이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邊精一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또 개선해야겠다 싶으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일단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邊精一 위원의 말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소위원회의 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林采正 각 소위원회에 각 당의 소집책임자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가지고 그 세 분들이 상의하셔서 사회를 돌아 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

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그 소집책이 사회를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林采正** 그렇지요.

○**金學元委員** 그러면 그 소집책 및 사회를 보는 사람을 각 당이 끌고루 해야지 각 소위원회에 맡겨 버리면 어느 한 당으로 몰리게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林采正**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당의 내부 소집책임자를 정해서 가지고 그 세 분들이 상의하면서 순번제로 사회를 하는 것인데 여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하시면 그 다음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 번씩 하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金學元委員** 아니 각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李相洙委員**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소위원회에 여야 책임 간사를 정하는데, 우리 여당끼리는 아직 의논은 못 했지만 여당에도 한 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소위가 세 개가 있으니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다시 모여서 각 소위의 책임 간사를 정하기로 했고, 어쨌든간에 여야 관계에서는 두 사람만 책임 간사를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련과 우리하교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어떤 소위원회에서는 여당, 어느 소위원회에서는 야당 이렇게 정한 것도 지금 없습니까?

○**李相洙委員** 한 소위에 여야 두 사람씩의 책임 간사가 있게 됩니다.

○**金學元委員** 서로 바꾸어 가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李相洙委員** 예.

○**邊精一委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벌써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혼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합니다. 어느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건 또는 여당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받아 들였건간에 잠정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으니 빨리 정상적으로 되도록 위원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알겠습니다.

○**鄭亨根委員** 國會事務處에 관한 법은 운영위원회로 넘기십니까?

○**委員長 林采正** 국회사무처에 관한 법은 운영위원회쪽에서 심사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鄭亨根委員**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委員長 林采正** 그것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관한 것은 역시 국회운영을 잘 알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또한 그 쪽에 전문성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이 안은 3당 간사들이 다 참석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委員長 林采正** 예.

○**金榮珍委員** 죄송합니다. 간사간에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컨대 國會制度에 관한 것을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 국회사무처 운영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로 돌린다는 얘기는 일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적어도 국회제도를 개혁을 한다고 해서 소위원회의 한 분야로 두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운영위원회로 넘긴다면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委員長 林采正** 국회제도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은 국회사무처에 관한 것입니다.

○**金榮珍委員** 아니 국회사무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제도와 관련된 것은 일단 여기에서 다루어 가지고 그리로 넘겨야지, 사무처도 국회제도의 일환인데 사무처를 그리 보낸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다룰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우리는 국회운영이고 국회사무처의 행정적인 부분은……

○**金榮珍委員**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국회사무처 직원의 배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회제도를 개혁하려면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처에 관한 것은 그 쪽에서 한다고 하면 처음에서부터 얘기가 다르지요.

이것은 조금 간사간에 합의……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 되었습니다.

○委員長 林采正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결의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처법까지 다룰 경우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으르 드렸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만일 위원회 전체결의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金榮珍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사무처의 모든 일을 전부 여기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다루다가 사무처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루어야지 아예 사무처 부분을 다 뺀다고 하면 국회제도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林采正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을 해야 합니까?

○李源馥委員 상정 안 하고 그냥……

○委員長 林采正 그러면 3당 간사들과 좀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金學元委員 委員長님, 이 문제는 가령 여기 특위에서 사무처 행정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되겠다고 결의를 하고, 또 만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결의를 한다면 이것이 서로 상충되어서 불쌍사나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하고 먼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난 뒤에 3당 간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야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운영위원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위원장이 조율을 하신 다음에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林采正 알겠습니다. 그러면……

○邊精一委員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采正 말씀하세요.

○邊精一委員 金學元 委員 말씀이 매우 사려깊

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논의의 결과는 국회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구성을 어떻게 하며 또 그 수는 몇 명으로 하며 어떤 부서를 두며 몇 명을 감축하거나 또는 늘리며 또 사무처중에 일부분을 빼 가지고 의정연구분야 또는 각 상임위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사무처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회사무처 직원의 무슨 급료나 결정하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국회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고 할 때 국회사무처법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결론이 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쪽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조정을 해서 우리가 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놓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委員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제도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다루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분 문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일테니까 여기 특위 위원장하고 3당 간사 또 운영위원장하고 거기 또 3당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가지고 원만하게 이 문제는 제도개혁 차원에서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이니까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각기 다루는 워크 스코프(work scope)를 구분해 주어 가지고 특위를 원만하게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金學元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면 조금 편안한 측면이나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특위 간사단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3당 원내총무단하고 사이에서 의사결정되는 것에 모든 위원들이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는, 특위원하고 하는 것은 현행 국회제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보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고 시스템상으로 이것은 이미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변경사항이든 백지상태에서 다 논의해보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특위에서 결정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전적으로, 미리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논의하고 굳이 3당총무간에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榮珍委員** 연계된 얘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법, 선거제도, 국회제도, 국회법이 분야에 관한 것이 정치구조를 바꾸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특별히 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쪽하고 기본적인 의견절충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한다면 정당법에 관한 것은 행자위원회에서 어디까지 다루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태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정당법이나 국회법이나 선거와 관련된 법에 관한 특별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모인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國會制度, 國會法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맡긴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국회제도나 국회법과 관련해서 무엇을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같은 논지로 政黨法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행자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원만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서 하라고 또 떼어주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세 법 또 세 제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논의과정에서 이런 저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나 각 당의 지휘부와 서로 연결하면서 의견이 개진되고 합의점을 찾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모습이지 이것을 미리 구분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당 간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지휘부와 상의해서 절충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采正 金基洙 委員** 말씀하세요.

○**金基洙委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하고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事務處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회운영이 없거나 그것을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사무처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운영의 대원칙과 구조와 절차를 정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국회사무처 기능은 따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무처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절차도 따라야 되고, 모든 국회운영에 사무처가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사무처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을 별도로 나름대로 정하고 또 이 쪽은 이 쪽대로 따로 정한다고 하면 아귀가 안 맞지 않겠어요? 그런 뜻에서 국회운영을 다루는 우리 특위에서 당연히 사무처조직과 구조,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만, 할 수 있어야만 대전제인 국회운영을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함께 논의되어야 되고 다만 그 와중에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수 위원들께서 내놓으신 안에 찬동하는 발언을 합니다.

○**委員長 林采正** 다음 **申榮國 委員** 말씀하세요.

○**申榮國委員** 원래 사무처소관 관계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총무단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찍

이 어떤 정립을 못하고 양쪽과 서로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金榮珍 委員이나 金基洙 委員 또 많은 동료위원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특위가 여야 열 명, 열 명 해서 이십 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아마 국회사 무처문제를 이 곳에서 다루려는 뜻이 있어서 각 당의 首席副總務가 자동케이스로 이 특위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위원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뜻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林采正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발언내용이 상당부분 합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여기서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측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시 말해서 國會運營法案을 이 쪽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측과 상의해서 관철되도록, 제가 관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하겠습니다.

○金榮珍委員 관철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委員長 林采正 관철이라는 말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邊精一委員 말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어 놓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委員長 林采正 또 모양새는 갖추어줘야지요.

○邊精一委員 틀림없이 하시는 것이지요?

○委員長 林采正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邊精一委員 그렇다면 위원장한테 맡겨둡시다.

○委員長 林采正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특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小委員會는 소위원회 위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出席委員

林采正	申榮國	金榮珍	邊精一
李相賢	李源馥	鄭亨根	李相洙
金榮煥	南宮鎮	朴宗雨	柳宣浩
李基文	金學元	鄭一永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朴 奉 國
專 門 委 員	金 基 英
立 法 審 議 官	林 仁 圭
立 法 審 議 官	安 秉 玉

【報告事項】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法律案(金仁坤議員外 46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議員外 23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法律案(秋美愛議員外 23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法律案(鄭東泳議員外 104人 發議)

政黨法中改正法律案(金玉斗議員外 104人 發議)

이상 5건 12月9日字 回附됨

國會法中改正法律案(安商守議員外 33人 發議)

12月14日字 回附됨

○議案送付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案

國會에서의證言및鑑定등에관한法律案(李信範議員外 23人 發議)

(이상 3건 國會制度運營改革委員會로부터)

12月22日字 送付됨

○請願回附

國政治制度關聯法改正에관한請願

(金權泰議員外 5人의 紹介로 提出)

12월10일자 회부됨